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1. 8.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294	정청래의원 등 11인	2020.6.29.	상정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7.27.)
				소위 심사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5.)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1.8.18.)
	2100874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0.6.29.	상정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7.27.)
				소위 심사	제3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0.11.2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5.)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1.8.18.)

건 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2101794	정청래의원 등 11인	2020.7.13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9.18.)
				소위 심사	제3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0.11.2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5.)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전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1.8.18.)
	2102613	신현영의원 등 10인	2020.08.03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9.18.)
				소위 심사	제3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0.11.2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5.)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전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1.8.18.)
	2102829	정청래의원 등 11인	2020.08.10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9.18.)
				소위 심사	제3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0.11.2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5.)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전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1.8.18.)

건 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2103112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0.08.21.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11.13.)
				소위 심사	제3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0.11.2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5.)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1.8.18.)
	2105555	김영호의원 등 27인	2020.11.20.	상정	소위직접회부(2020.11.26.)
				소위 심사	제3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0.11.2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5.)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1.8.18.)
	2105997	김원이의원 등 16인	2020.12.02	상정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2.24.)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1.8.18.)
2107949	최강욱의원 등 12인	2021.02.05	상정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4.19.)	

건 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전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 조정위원회(2021.8.18.)
	2108201	송기현의원 등 11인	2021.02.22	상정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 화체육관광위원회(2021.4.19.)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전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 조정위원회(2021.8.18.)
	2108953	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 화체육관광위원회(2021.6.21.)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전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 조정위원회(2021.8.18.)
	2109020	유정주의원 등14인	2021.03.24.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 화체육관광위원회(2021.6.21.)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전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 조정위원회(2021.8.18.)
	2109945	김영호의원 등 10인	2021.05.10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 화체육관광위원회(2021.6.21.)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6.)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	

건 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 조정위원회(2021.8.18.)
	2110702	박정의원 등 10인	2021.06.10	상정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7.13.)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 조정위원회(2021.8.18.)
	2110947	윤영찬의원 등 10인	2021.06.23	상정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7.13.)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 조정위원회(2021.8.18.)
	2111047	김용민의원 등 10인	2021.06.24	상정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7.13.)
				소위 심사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1.7.27.)
				안건 조정위 심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 조정위원회(2021.8.18.)

가. 이상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1.8.1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8.19.)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하고,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다.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라.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되,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6항).

마.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

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내용을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 17조의3 및 제 17조의4).

사. 법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아.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후보자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의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기사의 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7의3. “허위·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0명”을 “60명”으로, “90명 이내의”를 “120명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를 “법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를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을 “사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당원”을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제1항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개월이”를 “1년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장소에서”를 “장소에서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에는 같

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원래의 보도보다 시간·분량 및 크기를 작게 하여 정정보도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을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 또는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②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중전의 제17조의2)제1항 중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을 “청구를”로, “지체 없이”를 “곧바로”로, “정정보도청구등이”를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정보도청구등이”를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이하 이 항, 제17조의4 및 제34조에서 같다)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14조제1

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곧바로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전담인력의 배치) 제17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의4에 따른 표시 및 조치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배치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정보도청구등과”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에 따라 정정보도등에 관한 조정을 할 때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하도록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하도록 중재결정을 할 때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을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2.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3.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제3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자

2. 제1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도한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위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생략)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⑪ (생략)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생략)

0명 이하의-----

1. 법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

2.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

3. (현행과 같음)

4. -----
-----사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4.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5. (현행과 같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협의를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
-----범죄협의를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 또는 비위협의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

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가-----

-----.

③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이하 이 항, 제17조의4 및 제34조에서 같다)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

<신 설>

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곧바로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5(전담인력의 배치) 제17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의4에 따른 표시 및 조치의 이행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19조(조정) ① ~ ⑤ (생략)

<신설>

⑥ ~ ⑩ (생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배치한다.

제18조(조정신청) ① -----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 보도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조에 따라 정정보도등에 관한 조정을 할 때에는 제15조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⑦ ~ ⑪ (현행 제6항부터 제1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24조(중재)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0항까지와 같음)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하도록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4조(중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하도록 중재결정을 할 때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

③·④ (생략)

<신설>

당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2.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3.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제34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한 자

3.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자

2. 제1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도한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